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5. 2. 13.(목) 10:00

제25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금천종합복지타운 시설 운영관리 공공기관
위탁·대행 동의안
(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추병수

금천종합복지타운 시설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·대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653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5. 1. 23.
- 라. 회부일자 : 2025. 1. 23.

2. 제안이유

금천종합복지타운 시설 운영·관리의 전문적·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지속을 위해 공공기관에 사무를 대행하고자,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·대행 추진근거

- 1) 지방자치법 제117조(사무의 위임)
- 2)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(사업)
- 3)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(구의회 동의)

나. 위탁·대행 추진 필요성

- 1)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신속대응이 가능한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, 시설물 관리의 품질 제고
- 2) 공공서비스 제공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시흥2동 주민센터, 어린이집, 도서관 등이 입주한 공공복합시설인 금천종합복지타운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시설관리 보장

다. 위탁·대행 사무 주요 내용

- 1) 대상사업 : 금천종합복지타운 시설 운영·관리
- 2) 대행기간 : 2025. 4. 16.~2028. 4. 15. (3년)
- 3) 대행기관 : 금천구시설관리공단
- 4) 소요예산 : 290,822천원(전액구비)

4. 참고사항

- 1) 지방자치법 제117조(사무의 위임)
- 2) 지방공기업법 제76조(설립·운영)
- 3)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(사업)
- 4)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
(구의회 동의)

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」 제8조 제1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·대행하고자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
- 금천종합복지타운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년간 전문적 운영 경험을 갖춘 금천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대행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.

관련 법령

지방자치법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지방공기업법

제2조(적용 범위)

-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(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·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(이하 “지방직영기업”이라 한다)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.

9. 주택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)·토지 또는 공용·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

제76조(설립·운영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을 설립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7조(사업)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
1.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사업
2.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사업
3. 각종 구립 문화체육시설물 등의 관리와 운영사업
4.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·지정하는 사업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부대사업

제28조(대행사업) ① 공단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.

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

제8조(구의회 동의)

① 구청장이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·대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
2.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·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
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위탁·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4.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
5. 연간 위탁·대행금액(수탁·대행기관이 위탁·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·운영비를 포함한다)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
6. 재난, 재해 대응 등 위탁·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

③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·재대행 또는 재계약에 대해서도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